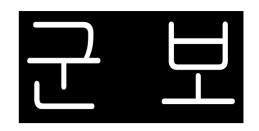
정 밧 칟

-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

- 소통의 화 합 행 정
- 환기찬 따뜻한 고품격 지역경제
- 복지사회
- 문화관광 청정환경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971호 2016. 5. 31(화)

규 칙

○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154호) …………2

시 고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33호) ……………13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34호) ··················15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35호)17 ○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 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16-36호)19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37호)22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38호) …………24 ○ 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16-39호) 26 ○ 완도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41호) ……………34 ○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법인 결정고시(완도군 고시 제2016-42호) ………36 ○ 완도 해양생물 농공단지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1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완도군 고시 제2016-44호) ………69

공 卫

○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216호) ·······72

0	어업면허 저문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217호)7
0	201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239호)7
0	민간자본유치 투자희망자 공모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243호)8
0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255호) … 8
0	완도군 도로명변경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263호)10
0	어업면허 유효기가 연장허가 공고(완도군 공고 제2016-264호)11

-1 -1	:	1			1	1
히라		i				
거뛰	:				1	1
. –	:	1			1	1

발 행 : 완도군/ 편집 : 기획예산실(☎550-5051, FAX550-5029)

완 도 군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2017, 4, 14 - 5, 07)"



와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규칙 공포

- 1.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2016. 5. 20. 공포합니다.
-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규칙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1부. 끝.

와

수신자 노, 도, 로, 보건지소

주무관

김찬영

법무통계담당 최**영미**

자치행정과장 오정임

부군수

차주경

군수

2016. 5. 19. 신우철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0668

(2016. 5. 19.) 접수

우 59124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www.wando.go.kr

전화번호 061-550-5211 팩스번호 061-550-5169 / inline7@korea.kr

/ 대국민 공개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5월 일

완도군수 MUMM

완도군 규칙 제1154호

붙임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1조** 중 "제102조의 규정에"를 "제102조에"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 제2조 본문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은행법」에 의한"을 "「은행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제2호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9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다른 법률의 규정에"를 "다른 법률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의하지"를 "따르지"로 한다.
- 제3조 중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를 "「지방공기업법」에"로 한다.
- 제4조제3항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지정하고자 할"을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내·외적"을 "대내외적"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0%이상"을 "60퍼센트 이상"으로, "10%에서"를 "10퍼센트에서"로, "4%의"를 "4퍼센트의"로, "순위간"을 "순위 간"으로, "1/2"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의 규정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하기"를 "높이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정하고자 할"을 "지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0일전까지"를 "50일 전까지"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체결되어 있는 금고의 약정은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완도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제5조제1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31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배점 (10점)을 평가	(1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또는 대손충담금 적립율 (유동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	(21)	
	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18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2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8)	
		2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9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만으로 평가	(5) (4)	

^{*} 기타 세부 항목별 배점기준은 행정자치부 관련 예규에 따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u>제102조의</u> 규정에 따라 완도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2조에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 ·
<u>정의는</u> 다음과 같다.	<u> 뜻은</u>
1.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2 <u>제9조제1항에</u>
따른 회계를 말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4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르 버르세
<u>다른 법률의 규정에</u> 따라 설치·운용 하는 자금을 말한다.	<u>다른 법률에</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6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	
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u>기명날인</u>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u>서명 또는 기명날인</u>
말한다.	- (7) 7) 1 (1) 6)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따르지</u>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	제3조(적용범위)
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금고지정에 대	
하여 적용한다. 다만, 「 <u>지방공기업법」의</u>	「지방공기업법」에
<u>규정에</u>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 4조(금고지정) ① · ② (생 략)	제 4조(금고지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회계는 1금고 지정(단일금고)을	3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기금은 1금고	
지정(단일금고) 또는 특별회계·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구분	
하여 지정할 수 있다. <u>다만, 특정기금을</u>	다만, 일반회계를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없으며,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u>한다.</u>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u>예치·운용하여야 한다</u>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u>의하여</u>	제5조(평가기준) ① 따라
금고를 <u>지정하고자 할</u> 경우에는 다음	<u>지정하려는</u>
각 호의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1 대내외적

재무구조의 안정성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의한 평가 및 배점은 다음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1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	
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2
<u>60%이상</u> 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u>60퍼센트 이상</u>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u>10%에서</u> 최소	<u>10퍼센트에서</u>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u>4퍼센트의</u>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순위 간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u>1/2</u> 을 적용한다.	<u>2분의 1</u>
③ 군수는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	③
비에 대하여 다음 <u>각 호의 규정에</u> 따라	<u>각 호에</u>
처리하여야 한다.	
세6조(위원회의 구성) ① 금고지정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투명성을 <u>기하기</u> 위하여 완도군금고	높이기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3분의 2
제12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u>지정하고자 할</u> 경우에 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 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일 90일	<u>지정하려는</u>
전까지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고, 관련 금고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때에는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	 ② <u>제1항에</u>
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기간만료 5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4조(약정의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u>하려는</u>

〈관계 법령〉

(안 제2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자부 예규 제30호)

② 용어의 정의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안 제4조)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지방재정법

- 제77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3. 「산림조합법」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4.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 5.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시·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점)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 - 총자본비율(7)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인정성 7점)로 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7) - 고정이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자기자본이익율(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1) - 항목추가 * 경쟁표 평가세분형목별 등급가 준은 해당 감독가면에서 각 지역 * 경쟁표 평가 세분형목별 등급가 준은 해당 감독가 믿어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 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원 새미울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기원 새미울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점처리 가능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금고자정 여부에 따라 팔수로 설치되는 자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 ※ 금고자정 여부에 따라 팔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4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4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게재(요청)일자	2016-05-03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3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u>안</u>)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허 가	' 의 치 모 전 나 '		이 되 면 적 되기기기		피 허 가	허 가 일			
번 호	ᅱ	시	목 식	(m²)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점사용료)
2016- 9	완도읍 1099		육상종묘생((인 수 관)	200.0	2016. 5. 3. 2021. 5. 2.	완도군 완도읍		어조합법인 이*준	2016. 5. 3. (면 제)

게재(요청)일자	2016-05-03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3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고시(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3일

완 도 군 수

O공유수면점용·사용 변경 허가내역O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항
허가	OI +I	- N	면적	허가	耳め	가 자	(면적 및 기간)		
번호	위치	목 적	(m²)	기 간	주 소	성 명	이 가 번 호	당 초	변경
2001-80	군외면 불목리 829-3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360.0	2011. 5. 3. 2016. 5. 2.	완도군 보길면	박* 남	2016-39	2011. 5. 3. 2016. 5. 2.	2016. 5. 3. 2021. 5. 2.
2011-39	고금면 봉명리 442-9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300.0	2016. 5. 23. 2021. 5. 22.	완도군 고금면	김 * 외2명	2016-40	2011. 5. 23. 2016. 5. 22.	2016. 5. 23. 2021. 5. 22.
2011-42	신지면 송곡리 668-17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210.0	2016. 5. 23. 2021. 5. 22.	완도군 신지면	정 * 호	2016-41	2011. 5. 23. 2016. 5. 22.	2016. 5. 23. 2021. 5. 22.
2001-104	소안면 가학리 234-1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300.0	2016. 5. 25. 2021. 5. 24.	완도군 소안면	황 * 옥	2016-42	2011. 5. 25. 2016. 5. 24.	2016. 5. 25. 2021. 5. 24.
2001-103	소안면 가학리 129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350.0	2016. 5. 25. 2021. 5. 24.	완도군 소안면	황 * 우	2016-43	2011. 5. 25. 2016. 5. 24.	2016. 5. 25. 2021. 5. 24.
2001-102	소안면 가학리 231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360.0	2016. 5. 25. 2021. 5. 24.	완도군 소안면	황 * 식	2016-44	2011. 5. 25. 2016. 5. 24.	2016. 5. 25. 2021. 5. 24.
2011-38	고금면 봉명리 572-13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180.0	2016. 5. 23. 2021. 5. 22.	완도군 고금면	김 * 근	2016-45	2011. 5. 23. 2016. 5. 22.	2016. 5. 23. 2021. 5. 22.
2015-60	보길면 부황리 43-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234.2	2015. 11. 5. 2020. 11. 4.	완도군 보길면	김 * 욱	2016-46	175.2m²	234.3m²
2011-41	고금면 봉명리 572-13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125.0	2016. 5. 23. 2021. 5. 22.	완도군 고금면	김 * 영	2016-47	2011. 5. 23. 2016. 5. 22.	2016. 5. 23. 2021. 5. 22.
2001-81	고금면 세동리 2-3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320.0	2016. 5. 3. 2021. 5. 2.	완도군 고금면	이 * 택	2016-48	2011. 5. 3. 2016. 5. 2.	2016. 5. 3. 2021. 5. 2.

게재(요청)일자	2016-05-13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김영훈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3	8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제5조 및 동법시행 대행자 선정 결과	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덕동1지구 2자합니다.				
	1. 지적측량대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덕동1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	F리 391-1번지 외 326필	지 / 459,970㎡				
내용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측량(지적재조	사에 관한 특별법 지	네11조)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	061-550-5377)으로	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덕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1일 완 도 군 수

- 1. 지적측량대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완도지사
- 2. 사업지구 명칭 : 덕동1지구
- 3. 사업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391-1번지 외 326필지 / 459,970㎡
-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지적재조사측량(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5. 기타사항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공간정보담당(☎061-550-53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재(요청)일자	2016-05-19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주정화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3	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관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 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내용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기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 2016. 5	제25조 및 전라남도 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시합니다.	E 사무위임조례 제2조 7	구정에 의하여				
	완 도 군 수 							

완도군 고시 제2016 - 36호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 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 학교)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 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19

완도군수

- 1.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학교) 변경 결정 조서 : 다음
- 2. 완도 군관리계획(경미한 변경 학교) 변경 결정 도면 : 게재 생략
- 3.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061-550-560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가) 학교 변경결정 조서

ユ브	도면 시설의 구분 표시 시설명 개 법	위치		면 적 (m²)		최 초	비고		
12	변호	\\\\\\\\\\\\\\\\\\\\\\\\\\\\\\\\\\\\\	세 분	71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H1-14
변경	5	학교	고등학교 (완도수산고)	완도읍 가용리 8-2학 일원	29,341	감)133	29,208	건고 제445호 (1984.11)	

(나) 학교 변경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고등학교 (완도수산고)	· 변경 · 면적 : 감) 133㎡	· 개설도로를 기준으로 학교구역 재조정

게재(요청)일자	2016-05-16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3	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그	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u>안</u>)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허 가	0 +	- 1	면 적	+1 -1 -1 -1 -1	피 허 가 (승	허 가 일	
번 호	위 치	목 적	(m²)	허가기간	주 소	성명	(점사용료)
2016-	노화읍 동천리 220-2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32.8	2016. 5. 16. 2021. 5. 15.	완도군 노화읍	김 * 아	2016. 5. 16. (면 제)

게재(요청)일자	2016-05-16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3	8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	응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에	률」 제8조제4항 규 동법 제8조제6항의	구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리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	공유수면 기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고시(안)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변경허가 하였기 동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6일

완 도 군 수

O공유수면점용·사용 변경 허가내역O

	공 유		변 경 사							
허가			면적	허 가	耳めに	가 자	(면적 및 기간)			
번호	위 치	목 적	(m²)	기 간	주 소	성 명	허 가 번 호	당 초	변 경	
2006-14	신지면 동고리 620-1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800.0	2016. 5. 25. 2021. 5. 24.	완도군 신지면	이* 열	2016-49	2011. 5. 25. 2016. 5. 24.	2016. 5. 25. 2021. 5. 24.	
2001-92	군외면 원동리 358 지선	육상해수양식 (인 수 관)	120.0	2016. 5. 16. 2021. 5. 15.	완도군 군외면	김 * 홍	2016-50	2011. 5. 16. 2016. 5. 15.	2016. 5. 16. 2021. 5. 15.	
2011-43	고금면 봉명리 428-3 지선	육상종묘생산 (인 수 관)	390.0	2016. 5. 23. 2021. 5. 22.	완도군 고금면	강 * 수	2016-51	2011. 5. 23. 2016. 5. 22.	2016. 5. 23. 2021. 5. 22.	

게재(요청)일자	2016-05-19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주정화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3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	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에 관한 법률 제88	조, 제91조 및 동법 시항	변경사유가 성령 제97조,				
내용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	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5					

완도군 고시 제2016 - 39호

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사유 가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5

완 도 군 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

구 분 항 목	고 시 내 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완도군 노화읍 동천리, 소안면 횡간리 일원	변경 없음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 종류 : 완도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 명칭 : 노화 - 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	변경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소로 비1- 7호선 L = 1,620m, B = 10.5m ~11.4m ○ 소로 비2-42호선 L = 488m, B = 8m 	변경 없음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성명 : 완도군수	변경 없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2. 7.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7.12.31	변경 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ㅇ 다음	변경 없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완도군청 지역개발과 비치)	
8. 인가조건	○ 게재생략	
9. 기타 문의	○ 전화 061-550-5622(지역개발과)	

				면?	-		소유자		관계인	
연번	토지 소제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m²)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1	노화읍 동천리	1159-2	전	460	270	손영희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0			
2	노화읍 동천리	1159-3	전	407	62	김상조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34			
3	노화읍 동천리	산130-4	임	1,238	106	김용석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34			
4	노화읍 동천리	1160	답	102	102	박봉욱	전라남도완도군완도읍 망석리1059			
5	노화읍 동천리	산137-1	임	2,777	76	김관중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 반계로104-21			
6	노화읍 동천리	1161	전	912	912	유명화	경기도안산시상록구건건동987 건건이-편한세상114-2006			
7	노화읍 동천리	1162-1	전	694	509	최영화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31-7			
8	노화읍 동천리	18-1	전	582	4	손영상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29			
9	노화읍 동천리	17-1	전	1,702	84	손송택	부산시금정구서동 520-114			
10	노화읍 동천리	16	전	1,927	1,927	이기종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107-1			
11	노화읍 동천리	13-2	전	916	263	최병석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35			
12	노화읍 동천리	13-1	전	185	185	박응선	-			
13	노화읍 동천리	12-1	전	1,111	230	권서운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33			
14	노화읍 동천리	11-1	전	430	128	최준우	서울동대문구제기동 719			
15	노화읍 동천리	10-1	전	466	113	최기정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77			
16	노화읍 동천리	산128-1	임	5,455	199	최영동	경기도안산시상록구 분대1길5-8(사동)			
17	노화읍 동천리	1163-26	잡	263	182	국	기획재정부			
18	노화읍 동천리	1163-28	잡	1,685	476	국	완도군			
19	노화읍 동천리	1163-27	잡	2,692	495	국	완도군			
20	노화읍 동천리	15-1	전	876	65	최만석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70			
21	노화읍 동천리	14-2	전	754	108	최만석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070			
22	노화읍 동천리	14	전	717	717	박봉윤	완도군노화읍동천리 136			
23	노화읍 동천리	산129-2	임	17,157	7,421	나선룡	장성군삼계면사창리 483-1			
24	노화읍 동천리	1163-17	도	1,302	496	국	국토해양부			

25	노화읍 동천리	1163-20	도	4,215	300	국	국토해양부			
26	노화읍 동천리	공유수면			7,646	국	_			
27	소안면 횡간리	산154-3	임	277	78	국	완도군			
28	소안면 횡간리	산154-2	임	1,508	215	최복규	전라남도완도군소아면 횡간리산249			
29	소안면 횡간리	산153-1	임	4,066	643	홍광의	광주북구신안동 258-1			
30	소안면 횡간리	산151-1	전	298	213	김성술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12			
31	소안면 횡간리	산150-1	임	9,521	2,200	김형봉	광주시서구백운동 592-39			
32	소안면 횡간리	산142-1	임	6,347	2,806	허영기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40			
33	소안면 횡간리	산136-5	임	4,463	879	김명웅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5			
34	소안면 횡간리	산143-1	전	1,388	850	김경채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			
35	소안면 횡간리	산138-1	임	5,554	474	김봉구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180			
36	소안면 횡간리	산136-3	임	8,331	5,922	김선용	광주광역시남구이장동 343-1			
37	소안면 횡간리	산137-1	임	12,000	10	김승남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2			
38	소안면 횡간리	산137-2	임	12,000	338	김승남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2			
39	소안면 횡간리	산133-1	임	1,884	502	김광률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73			
40	소안면 횡간리	산121-1	임	28,165	6,195	곣	완도군			
41	소안면 횡간리	산124-1	임	17,256	4,079	최명욱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48			
42	소안면 횡간리	산123-3	임	6,942	1,918	김대재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179-1	소안농업협동 조합 소안수산업협 동조합	완도군소안면비 자리1190-1 완도군소안면비 자리1130-1	가압류
43	소안면 횡간리	산123-1	임	595	595	김광률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73			
44	소안면 횡간리	산200-1	임	1,388	301	김형렬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0			
45	소안면 횡간리	산201-1	전	694	439	최원회	완도군소안면횡간리 249			
46	소안면 횡간리	산202	전	298	298	강재윤				
47	소안면 횡간리	산122-1	임	9,124	49	최형규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49			
48	소안면 횡간리	산122-2	임	9,124	369	최형규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49			
49	소안면 횡간리	산203-1	전	694	526	김대재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179-1	소안농업협동 조합 소안수산업협 동조합	완도군소안면비 자리1190-1 완도군소안면비 자리1130-1	가압류

	4 0171	1 1		1						
50	소안면 횡간리	산206-1	임	1,091	897	김재순	_			
51	소안면 횡간리	산204-1	전	198	16	최복규	전남완도군소안면 횡간리산249			
52	소안면 횡간리	산207-1	전	793	381	허종갑	전남완도군소안면 횡간리산248			
53	소안면 횡간리	산147-1	전	893	22	허명희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9-1			
54	소안면 횡간리	산230-1	임	595	442	김형철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8			
55	소안면 횡간리	산229-1	임	1,488	56	한덕신	_			
56	소안면 횡간리	산224-1	전	1,190	664	최복규	전남완도군소안면 횡간리산249			
57	소안면 횡간리	산222	전	496	496	한덕신	_			
58	소안면 횡간리	산223-1	임	793	597	신종석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4			
59	소안면 횡간리	산217-1	전	1,686	153	김달옥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35-1	소안농업협동조 합 소안수산업협동 조합	완도군소안면비 자리1190-1 완도군소안면비 자리1130-1	가압류
60	소안면 횡간리	산221	임	397	397	김순길	-			
61	소안면 횡간리	산219-2	임	3,932	343	김영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 봉동 211-61			
62	소안면 횡간리	산219-4	임	2,316	891	김영채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 봉동 211-61			
63	소안면 횡간리	산220-1	전	595	72	김순길	_			
64	소안면 횡간리	산216-1	전	793	657	김명웅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55			
65	소안면 횡간리	산212-1	전	595	85	김대철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42			
66	소안면 횡간리	산213-1	묘	2,678	1,229	亿	완도군			
67	소안면 횡간리	산215-1	임	1,190	353	김승남	완도군 소안면 구도길 13			
68	소안면 횡간리	산214-1	임	4,463	504	김대철	완도군소안면횡간리 산242			
69	소안면 횡간리	산231	학	397	33	허화자	전라북도김제시금구면 선암리 154-2			근저당

게재(요청)일자	2016-05-26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주정화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4	0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내용	1. 완도군 고시 제2016-5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완도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축 면적이 변경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도군 고시 제2016 - 40호

완도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1. 완도군 고시 제2016-5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완도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건축 면적이 변경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 2. 관계 도서는 완도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5.

완 도 군 수

□ 실시계획인가 고시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고
1. 사업시행 위치	○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1945번지	변경 없음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 종류 : 완도 군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사업 명칭 : 완도군 전복산업[공공·문화체육시설 (연구시설)] 연구센타 조성사업	변경 없음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사업면적: 19,039㎡ ○사업규모: 종묘배양시설, 해수저장동 증축 건축연면적 기정: 5567.69㎡ 변경: 5719.79㎡	변경
4. 시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000번지 ○ 성명 : 전라남도지사	변경 없음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6.1.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16.12.31	변경 없음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ㅇ 다음	변경 없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	변경 없음
8. 인가조건	○ 게재생략	변경 없음
9. 기타 문의	○ 전화 061-550-5603(지역개발과)	변경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m²)		소유자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상 면 적	편입 면 적	성 명	주 소	비고
총계	1 달	필지		19,039	19,039			
1	신지면 대곡리	1945	답	19,039	19,039	완도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비고
	리	지번	011			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E-1-1011 X 110	
				해	당	사	항	없	이미			

게재(요청)일자	2016-05-18	담당부서	해양수산정책과	김태엽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4	1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내용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u>안</u>)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8일

완 도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역

허가 위치		모저		면 적	+1-1-1-1-1-L	피 허 가 (승 인)자				허 가 일	
번 호	위	시	목	적	(m²)	허가기간	주	소	성	명	(점사용료)
2016- 10	신지면 산10-6		해안침식	방지시설	1,166.0	2016. 5. 18. 2016. 9. 17.	전남 · 삼향읍 :	무안군 오룡길 1	전라남	도지사	2016. 5. 18. (면 제)

고시내용

페이지: 1/1

게재(요청)일자	2016-05-2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김현미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4	2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	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법인 결정고시							
내용	관리조례 제7조(민간위탁 적격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탁기간)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재 위탁 신청한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법인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6.5. 25.							

완도군고시제 2016-42호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법인 결정고시 - 청 해 요 양 원 -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위탁기간)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7조(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재 위탁 신청한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수탁법인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 수탁자 현황

법인 · 단체명	대표자	수탁기간	비고
(재)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노회 땅끝노회 서부유지재단	심재식	2016.6.1.~2019.5.31.(3년)	

2016년 5월 25일

완 도 군



고시내용

페이지: 1/1

게재(요청)일자	2016-05-26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김상균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4	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 해양생물 농공단지계획 등	승인(변경) 및 지형되	E면 고시	
내용	완도군 고시 제2012-57(2012 해양생물 농공단지에 대하여 의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결정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	「산업단지 인?허가 시하고,「산업입지 달 관한 법률」30조에 이용에 관한 법률」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경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따른 군관리계획(변경)을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례법」제15조에 21조에 을 I기본법↓제8조

완도 해양생물 농공단지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완도군 고시 제2012-57(2012.10.19.)호 및 제2013-35(2013.5.3.)로 승인 고시된 완도 해양생물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의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변경)을 결정고시하며,「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완 도 군 수

① 해양생물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14번지 일원

└ 변경 : 110,192.4㎡(감 0.6㎡)

※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를 활용한 지역특화단지 조성
- 해양생물 특성화 기반마련 및 미래전략산업 벤처단지 육성기반구축
- 기 조성된 농공단지와 연계화 · 집적화하여 개발잠재력 활용

3.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완도군수

나. 주 소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 ┌기정 : 2011년 ~ 2015년

└ 변경 : 2011년 ~ 2017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유치업종

• 식료품제조업(C10), 음료제조업(C11),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H52), 도매 및 상품증개업(G46), 연구개발업(M70),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C13), 운송장비제조업(C31), 기타기계장비제조업(C29)

나. 유치업종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0,369	100.0	
	식료품제조업(C10)	28,118	39.9	수산물가공
수산식품 가공 및	음료제조업(C11)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H52)	3,272	4.6	액기스 수산물 냉동냉장
저장처리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17,438	24.8	수산물 유통
	연구개발업(M70)	6,660	9.5	R&D 단지
수산업 관련장비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C13) 운송장비제조업(C31)	4,500	6.4	어망제조 요트제작
제조	기타기계장비제조업(C29)	10,381	14.8	전복기자재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一 七	기정	변경	변경후	T'8 円(%)	비끄
합 계	110,193	감) 0.6	110,192.4	100.0	
산업시설용지	70,369	_	70,369	63.9	
지원시설용지	3,874	_	3,874	3.5	
공공시설용지	35,950	감) 0.6	35,949.4	32.6	
도 로	16,872	감) 0.6	16,871.4	15.2	
주차장	533	_	533	0.5	
공 원	2,999	_	2,999	2.7	
녹 지	12,971	_	12,971	11.8	
저류지	2,526	_	2,526	2.3	
가압장	49	_	49	0.1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가) 도로 총괄(변경)

○ 총괄표(변경)

		합	계	2 류			3 류				
	1 21 人	cd σl.(m)	면적(m²)		1 21 人	٨١ ١ ()	면적	1.23人	Ċ] Ζ].(~~)	면적(m²)	
	도선수	연장(m)	기정	변경	工也十	연장(m)	(m²)	工心丁	연장(m)	기정	변경
합계	11	1,592	16,872	16,871.4	1	14	121	10	1,578	16,751	16,750.4
중로	7	1,285	15,522	15,521.4	-	-	_	7	1,285	15,522	15,521.4
소로	4	307	1,350	1,350	1	14	121	3	293	1,229	1,229

나) 도로계획(변경)

○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Ť	구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최초	비고
丁证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ড	(m)			형태	결정일	비포
기정	중로	3	27	12	집산 도로	274	483-14	소로 완2-107 완도읍 죽청리 483-21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28	12	집산 도로	408	중로3-27 완도읍 죽청리 483-1	480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29	12	집산 도로	74	1001	중로3-27 완도읍 죽청리 483-22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0	12	집산 도로	6	중로3-13 완도읍 죽청리 1001	완도읍 죽청리 1001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1	12	집산 도로	6	중로3-13 완도읍 죽청리 1001	완도읍 죽청리 483-26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2	12	집산 도로	6	중로3-13 완도읍 죽청리 1001	완도읍 죽청리 483-25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3	12	집산 도로	511	중로3-13 완도읍 가용리 1097	1097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변경	중로	3	33	12	집산 도로	511	중로3-13 완도읍 가용리 1097	중로3-13 완도읍 가용리 1097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면적 감소
기정	소로	완2	107	8	국지 도로	14	중로3-27 완도읍 죽청리 479	완도읍 죽청리 479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소로	완3	43	4	특수 도로	186	483-4	중로3-30 완도읍 가용리 483-22	보행자 전용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소로	완3	44	4	특수 도로	91	중로3-34 완도읍 가용리 811	중로3-34 완도읍 가용리 810-2	보행자 전용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소로	완3	45	6	국지 도로	16	중로3-34 완도읍 가용리 산17-3	완도읍 가용리 산17-3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3	중로3-33	• 면적감소 - 면적 : 감) 0.6㎡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다)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H	o) =1		면적(m²)	최 초	ul –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기정	22	노외 주차장	완도읍 죽청리 483-14 일원	533	-	533	완고제57호 (12-10-19)	

(2) 공간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공원계획(변경없음)

- д н	도면	기지파	시설의	.છો 7ાં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7	소공원	소공원	완도읍 죽청리	2,999	_	2,999	완고제57호	
				483-33 일원	2,000		2,000	(12-10-19)	

나) 녹지계획(변경없음)

-7 H	도면	กมพ	시설의	A) =1		면적(m²)		최 초	.v)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힙	합계 9개소		소	12,971	_	12,971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83-75 일원	2,222	_	2,222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71 일원	962	_	962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65 일원	876	_	876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83-4 일원	696	_	696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완도읍 죽청리 940 일원	1,465	_	1,465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832 일원	1,695	_	1,695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5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815 일원	1,137	_	1,137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812 일원	2,466	_	2,466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산 20-1	1,452	_	1,452	완고제57호 (12-10-19)	

(3)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공업용수량	생활용수량	계	비고
계	555 ㎡/일	106 ㎡/일	661 m³/일	

(4)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생활오수량	공장페수량	지하수 유입량	합 계	처리계획
(㎡/일)	(㎡/일)	(㎡/일)	(㎡/일)	
90.16	293.3	38.35	421.81	기존 농공단지 차집관로를 통하여 오·폐수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 토록 계획

(5)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7	전력사용량(MWh/년	고그바버		
계	산업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공급방법	
26,195	16,349	9,846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6)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유치업종	규모	산정기준	수요량(회선)	여유율(%)	산정량(회선)
합 계	-	-	162	-	211
산업시설	30개업체	5회선/업체	150	30	195
지원시설	3,956㎡ (연면적)	0.03회선/10㎡	12	30	16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직접	열 연료수요량		간접열 연료수요량		
	분	열수요량	연료수요	.량(LNG)	NG) 열수요량 연료수요량(LNG		.량(LNG)
		(Gcal/년)	천N㎡/년	toe/년	(Gcal/년)	천N㎡/년	toe/년
산업시	설용지	6,422	616	642	31,782	3,048	3,179
기타시	설용지	332	32	33	2,471	297	309
합	계	6,754	648	675	34,253	3,345	3,488

(8)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폐기물처리계획
해양생물 농공단지	 생활페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적정용량의 폐기물 수거함 및 분리함 등을 설치・운영하여 가연성 및 불연성으로 분리・수거한 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지정폐기물 : 사업지구에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전량 위탁·처리

-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해당없음)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해당없음
- 9. 관계도서는 완도군청 경제산업과(061-550-556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② 해양생물 농공단지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완도 해양생물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완도군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를 활용한 지역특화단지 조성
- 해양생물 특성화 기반마련 및 미래전략산업 벤처단지 육성기반구축
- 기 조성된 농공단지와 연계화 · 집적화하여 개발잠재력 활용

나. 사업의 개요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1 L	기정	변경	변경후	1 8 7 (70)	71 -
합 계	110,193	감) 0.6	110,192.4	100.0	
산업시설용지	70,369	_	70,369	63.9	
지원시설용지	3,874	_	3,874	3.5	
공공시설용지	35,950	감) 0.6	35,949.4	32.6	
도 로	16,872	감) 0.6	16,871.4	15.2	
주차장	533	_	533	0.5	
공 원	2,999	_	2,999	2.7	
녹 지	12,971	_	12,971	11.8	
저류지	2,526	-	2,526	2.3	
가압장	49	_	49	0.1	

(2)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유치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중분류)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70,369	100.0	
	식료품제조업(C10)	28,118	39.9	수산물가공
수산식품 가공 및	음료제조업(C11)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H52)	3,272	4.6	액기스 수산물 냉동냉장
저장처리	도매 및 상품중개업(G46)	17,438	24.8	수산물 유통
	연구개발업(M70)	6,660	9.5	R&D 단지
수산업 관련장비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C13) 운송장비제조업(C31)	4,500	6.4	어망제조 요트제작
제조	기타기계장비제조업(C29)	10,381	14.8	전복기자재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14번지 일원

나. 면 적 기정 : 110,193㎡ 변경 : 110,192.4㎡(감 0.6㎡)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기 간 : 기정 : 2011년 ~ 2015년 변경 : 2011년 ~ 2017년

- 6. 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 □ 군관리계획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 (1) 완도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7	ч		면 적(㎡)		구성비
	구	분	기 정	변경	변경후	(%)
		총 계	1,079,716,987		1,079,716,987	100.00
		중 계	(684,591,047)	_	(684,591,047)	100.00
		합계	26,633,097	_	26,633,097	2.47
		소 계	2,626,847	-	2,626,847	0.24
		제1종전용주거지역	_	-	_	-
	주거	제2종전용주거지역	-	_	_	_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889,948	ı	1,889,948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583,319	_	583,319	0.05
		제3종일반주거지역	41,390	_	41,390	0.01
		준주거지역	対象 地	0.01		
		소 계	601,428	_	601,428	0.06
	상업	중심상업지역	-	-	_	_
도시	지역	일반상업지역	601,428	-	601,428	0.06
지역	7 1 -1	근린상업지역	_	_	_	_
		유통상업지역	_	-	_	_
		소 계	560,157	_	560,157	0.05
	공업	전용공업지역	-	-	_	_
	지역	일반공업지역	_	_	-	-
		준공업지역	·	_		0.05
		소계				1.79
	녹지	보전녹지지역				0.12
	지역	생산녹지지역				0.12
		자연녹지지역		_		1.55
		미 지 정	3,551,725	_	3,551,725	0.33
		합계	1,053,202,208	_	1,053,202,208	97.53
		소 계	91,026,732	_	91,026,732	8.43
	관리	보전관리지역	12,549,251	_	12,549,251	1.16
도시	지역	생산관리지역	42,363,312	-	42,363,312	3.93
지역		계획관리지역	36,114,169		36,114,169	3.34
외의		농림지역	143,909,906	_	143,909,906	13.33
지역	자연	소 계	818,147,252	_	818,147,252	75.77
	환경	육 지 부		_		12.70
	보전 지역	해 면 부	, ,	-		63.07

※ 주 : 1. ()해면부

- 2. 기정은 완도군 고시 제2013-35호(2013.5.3) 완도 해양생물 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시항임
- 3. 용도지역결정변경은 완도 해양생물농공단지에 한함

(2) 완도 해양생물농공단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7 H		구성비	ען די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	비고
합계	110,193	감) 0.6	110,192.4	100.0	
도시지역	41,506	감) 0.6	41,505.4	37.7	
공업지역	41,506	감) 0.6	41,505.4	37.7	
준공업지역	41,506	감) 0.6	41,505.4	37.7	
관리지역	68,687	-	68,687.0	62.3	
계획관리지역	68,687	_	68,687.0	62.3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	지역	ᄜᇸ	O 저 ㄹ	
표시 번호	위치	기정	변경	면적 용적률 변경사유 (㎡) (%) 변경	변경사유	
-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809번지 일원	준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41,505.4	150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적(㎡)			
구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변경	o	완도	완도읍 죽청리	110,193	감)0.6	110,192.4	산업
번/3	0	해양생물농공단지	483-14번지 일원	110,195	名D.0 	110,192.4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m²)		Ą	년경사유		
변경	8	완도읍 ³ 483-14번지		110,192.4 (감 0.6㎡)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면 적(m²)		구성비(%)	비고
구 분	기정	변경	변경후	T'8'H(%)	비꼬
합 계	110,193	감)0.6	110,192.4	100.0	
산업시설용지	시설용지 70,369 -		70,369	63.9	
지원시설용지	3,874	_	3,874	3.5	
공공시설용지	35,950	감)0.6	35,949.4	32.6	
도 로	16,872	감)0.6	16,871.4	15.2	
주차장	533	_	533	0.5	
공 원	2,999	_	2,999	2.7	
녹 지	12,971	_	12,971	11.8	
저류지	2,526	_	2,526	2.3	
가압장	49	_	49	0.1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 로(변경)

○ 총괄표(변경)

		합	계		2 류			3 류			
류별	1 21 2	ΛΙ Ζ Ι.(~~)	면전	(m²)	, 23 人	⟨d z].(m)	면적	1 21 ~	어기(~~)	면적(m²)	
	노선수	연장(m)	기정	변경	변경 노선수		(m²)	노선수	연장(m)	기정	변경
합계	11	1,592	16,872	16,871.4	1	14	121	10	1,578	16,751	16,750.4
중로	7	1,285	15,522	15,521.4	-	-	-	7	1,285	15,522	15,521.4
소로	4	307	1,350	1,350	1	14	121	3	293	1,229	1,229

○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모			رد اد			23.0	-1 -	
구분	등급	류별	ゖ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3	27	12	집산 도로	274	중로1-9 완도읍 죽청리 483-14	소로 완2-107 완도읍 죽청리 483-21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28	12	집산 도로	408	중로3-27 완도읍 죽청리 483-1	중로3-27 완도읍 가용리 480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29	12	집산 도로	74	중로3-13 완도읍 죽청리 1001	중로3-27 완도읍 죽청리 483-22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0	12	집산 도로	6	중로3-13 완도읍 죽청리 1001	완도읍 죽청리 1001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1	12	집산 도로	6	중로3-13 완도읍 죽청리 1001	완도읍 죽청리 483-26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2	12	집산 도로	6	중로3-13 완도읍 죽청리 1001	완도읍 죽청리 483-25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중로	3	33	12	집산 도로	511	중로3-13 완도읍 가용리 1097	1097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변경	중로	3	33	12	집산 도로	511	중로3-13 완도읍 가용리 1097	중로3-13 완도읍 가용리 1097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소로	완2	107	8	국지 도로	14	중로3-27 완도읍 죽청리 479	완도읍 죽청리 479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소로	완3	43	4	특수 도로	186	중로1-9 완도읍 가용리 483-4	483-22	보행자 전용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소로	완3	44	4	특수 도로	91	중로3-34 완도읍 가용리 811	중로3-34 완도읍 가용리 810-2	보행자 전용도로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소로	완3	45	6	국지 도로	16	중로3-34 완도읍 가용리 산17-3	완도읍 가용리 산17-3	일반 도로	완고제57호 (12-10-19)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33	중로3-33	• 면적감소 - 면적 : 감) 0.6㎡	·지적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나) 주차장(변경없음)

○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서由	o) =1		면적(㎡)	최 초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기정	22	노외 주차장	완도읍 죽청리 483-14 일원	533	-	533	완고제57호 (12-10-19)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공원(변경없음)

○ 결정(변경) 조서

그ㅂ	도면	시설명	시설의	위 치		면 적(㎡)		최초	비고
구분	표시	시결성	세분	T 1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기정	17	소공원	소공원	완도읍 죽청리 483-33 일원	2,999	-	2,999	완고제57호 (12-10-19)	

나) 녹지(변경없음)

○ 결정(변경) 조서

7 11	도면	기 2년 1년	시설의	6) -)		면적(m²)		최초	บไ 🗃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비고
합	·계		9개.	소	12,971	_	12,971		
기정	9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83-75 일원	2,222	_	2,222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0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71 일원	962	-	962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1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65 일원	876	-	876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2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죽청리 483-4 일원	696	_	696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완도읍 죽청리 940 일원	1,465	_	1,465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4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832 일원	1,695	_	1,695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5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815 일원	1,137	-	1,137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6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812 일원	2,466	_	2,466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17	녹지	경관녹지	완도읍 가용리 산 20-1	1,452	_	1,452	완고제57호 (12-10-19)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가) 수도공급설비

○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적(m²)		최 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비고
기정	23	가압장	완도읍 죽청리 483-19 일원	49	_	49	완고제57호 (12-10-19)	

(4)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저류시설)

○ 결정(변경) 조서

	도면 구분 표시 시설명		시설의			면적(㎡)		최초	
구분	표시 번호	시설명	세분	위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이	비고
	합계 2개		2개소	2,526	-	2,526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완도읍 죽청리 483-23 일원	905	-	905	완고제57호 (12-10-19)	
기정	5	유수지	저류시설	완도읍 가용리 815 일원	1,621	-	1,621	완고제57호 (12-10-19)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키그비ㅎ	면 적(㎡)	획	지	비고
도인인모	가구번호	선 석(m)	위 치	면적(㎡)	n) 12
합 🧷	계	70,369		70,369	
	A1	3,272	1	3,272	산업시설용지
			1	3,066	산업시설용지
	A2	22,240	2	2,564	산업시설용지
	AZ	22,240	3	2,750	산업시설용지
			4	13,860	산업시설용지
			1	1,912	산업시설용지
	A3	9,843	2	3,634	산업시설용지
			3	4,297	산업시설용지
A			1	2,403	산업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A4	6,798	2	2,399	산업시설용지
			3	1,996	산업시설용지
			3	3,408	산업시설용지
	A5	9,058	4	3,100	산업시설용지
			5	2,550	산업시설용지
	A6	0.710	1	4,322	산업시설용지
_	A0	8,718	2	4,396	산업시설용지
	A7	4,278	1	4,278	산업시설용지
	A8	6 160	1	1,662	산업시설용지
	Ao	6,162	3	4,500	산업시설용지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흭	지	비고
도인한모	가무현호	전 겍(M)	위 치	면적(㎡)	HI 17
함	계	3,874	-	3,874	
			4	620	지원시설
	B1	3,874	5	647	지원시설
B (2) 0) 1) 14 0 2)			6	650	지원시설
(지원시설용지)			7	651	지원시설
			8	652	지원시설
			9	654	지원시설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도인인모	기기 원호	한 역(Ⅲ)	위 치	면적(㎡)	H1 77
합계		533	_	533	
B (주차장용지)	B1	533	10	533	주차장

○ 가압장 용지

도면번호	기그비ㅎ	가구번호 면 적(㎡) -		획 지		
그런 한모	7円 包文	한 역(Ⅲ)	위 치	면적(㎡)	비고	
ਨੂੰ}-	계	49		49		
B (가압장 용지)	B1	49	2	49	가압장	

○유수지 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조인한모	가무한호	전 석(m)	위 치	면적(m²)	N 12	
항	계	2,526		2,526		
A	A1	905	3	905	유수지	
(유수지 용지)	A8	1,621	4	1,621	유수지	

○ 공원 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흭	비고	
도한번호	가무현호	한 석(m)	위 치	면적(㎡)	H 12
합	계	2,999		2,999	
B (공원 용지)	Bl	2,999	3	2,999	소공원

○녹지 용지

도면번호	기구비축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포인턴호	가무면호	년 석(m)	위 치	면적(㎡)	비고	
합:	계	12,971		12,971		
	A1	1,838	2	962	경관녹지	
	AI	1,030	4	876	경관녹지	
	A3	1,032	4	1,032	완충녹지	
	A4	1,129	4	171	경관녹지	
			5	197	경관녹지	
A D			6	196	경관녹지	
A, B (녹지 용지)			7	132	경관녹지	
			8	433	완충녹지	
	A5	0.147	1	1,695	경관녹지	
	AS	3,147	2	1,452	경관녹지	
	A8	2 602	2	2,466	경관녹지	
	Ao	3,603	5	1,137	경관녹지	
	B1	2,222	1	2,222	경관녹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시설 (A1-1, A2-1,2,3,4, A3-1,2,3,		용 도	허용 용도	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부대복리시설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 70% 이하		
		용	적률	• 150% 이하		
A	A5-3,4,5,	A4-1,2,3, A5-3,4,5, A6-1,2, A7-1 A8-1,3) 반		• 4층 이하		
	A7-1			-		
	A0-1,3)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 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음	
		ŏ	형태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높이 1.2m 이하의 담정	및 경사지붕을 권장 }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Ž	박 채	구분 블록A1,A3 주조색 N(밝은 보조색 2.BG~ 강조색 2.5E	회색) N(밝은 회색) 5BG 7.5Y~2.5GY	
		건	축선	› 건축한계선 : 2m (지구	'단위계획도 참조)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 도	허용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의 교육원, 다목의 직업훈련소, 마목의 연구소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가목의 주차장, 나목의 세차장, 라목의 검사장, 바목의 정비공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В	지원시설 (B1-4,5,6,	용적률		• 150% 이하		
В	7,8,9)	높이		• 4층 이하		
		배치		-		
				 건물의 주방향을 주도로를 향해 배치함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음 		
				 지붕의 형태는 슬라브형 지양,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 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권장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권장 		
		Ą	벅채	주조색 N(밝은 회색)보조색 7.5Y~2.5GY 강조색 7.5Y~10Y		
		건	축선	• 건축한계선 : lm (지구단위계획도 참조)		

(3)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 번호	위 치	3	구	분	계 획 내 용
В	면호 주차장		여 나	허용 용도 불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상 준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는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허용함
	(B1 10)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적률	• 150% 이하
		_		<u>:이</u> -제한	● 5층 이하
				-세안 치	<u>-</u>
				<u> ^ </u> 태	_
			0 -11		• 주조색 N(밝은 회색)
			색	l 채	• 보조색 7.5Y~2.5GY
					• 강조색 7.5Y~10Y
			건	축선	-

○ 가압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용	허용 용도	• 가압장 및 부대시설
		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율	● 7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В	가압장	7	들이	• 5층 이하
В	(B1-2)	건축	추제한	-
		Ħ	H치	-
		ŏ	형태	-
				● 주조색 N(밝은 회색)
		く	백채	● 보조색 7.5Y~2.5GY
				● 강조색 7.5Y~10Y
		건	축선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A	산업시설 A1~A8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20m이내에는 진출입불가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시설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완도군 주차장조례에따라 적합하게 설치 ■ 차폐조경 ◆ 소음방지 및 환경보호, 서로 상충되는 용도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고,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차폐조경을 설치 ■ 고효율에너지이용설비 ●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지침 「별표1」에서 제시한 고효율설비 중 업종별로 이용 가능한 설비를 적용하도록 권장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В	지원시설 Bl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대지 내 공지 ●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동일하게 유지 ●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 고효율에너지이용설비 ●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지침「별표1」에서 제시한고효율설비 중 업종별로 이용 가능한 설비를 적용하도록권장 	

(3)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주차장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В	주차장 B1	 차량진출입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 주차장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완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4) 기타사항(변경없음)

○ 경관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고
-	해양 농공 지구단 구	단지 위계획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중 「경관부문 시행지침」을 따름	

붙임 1

토지 및 권리조서

□ 토지조서

બ્રામા	7 13	≵ -j] -j]		,	지번		-) D	면	택(㎡)		소유자	ul –
선면	구분	소재지		본번	-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비고
		총 81 필지						110,193	110,192.4			
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54	-	0	전	479	479	완도군		
2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99	-	1	답	588	588	김성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50-1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99	-	1	답	588	588	완도군		
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0	-	0	답	564	564	이황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15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0	_	0	답	564	564	완도군		
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1	-	0	답	565	565	이황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15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1	-	0	답	565	565	완도군		
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2	-	1	전	972	972	이경원		
•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1	_	0	답	565	565	완도군		
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2	-	2	도	86	86	완도군		
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2	-	3	임	136	136	이경원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2	_	3	임	136	136	완도군		
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3	-	1	임	69	69	국(기획재정부)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2	_	3	임	136	136	완도군		
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3	-	2	수	40	40	국(국토해양부)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3	_	2	수	40	40	완도군		
1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3	-	3	임	83	83	국(산림청)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3	_	3	임	83	83	완도군		
1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4	-	1	답	337	337	이용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29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4	_	1	답	337	337	완도군		
12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4	-	2	수	10	10	완도군		
1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5	-	0	답	96	96	이용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29	
•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5	_	0	답	96	96	완도군		

બ મો	7.11	≵ →Î] →]	;	지번		지목	면?	덕(m²)		소유자	비고
연변	구분	· 소재지	본번	-	부번	시독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미끄
1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6	1	0	답	902	902	유만성외 2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6-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6	-	0	답	902	902	완도군		
1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7	-	0	답	662	662	김영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8번길 17-1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7	_	0	답	662	662	완도군		
1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7	-	1	답	313	313	이후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54 현대아파트 101-70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7	-	1	답	313	313	완도군		
1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8	_	0	답	860	860	이후곤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54 현대아파트 101-70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8	_	0	답	860	860	완도군		
1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9	_	0	답	1,831	1,831	이도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85-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09	_	0	답	1,831	1,831	완도군		
1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0	-	1	답	1,055	1,055	이도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85-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0	_	1	답	1,055	1,055	완도군		
2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0	1	2	답	1,048	1,048	이도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85-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0	_	2	답	1,048	1,048	완도군		
2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1	_	0	답	2,512	2,512	이용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29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1	_	0	답	2,512	2,512	완도군		
22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2	-	0	답	3,246	3,246	이용래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24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2	_	0	답	3,246	3,246	완도군		
2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3	_	0	답	2,188	2,188	이용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52 무등파크 맨션 101-1406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3	_	0	답	2,188	2,188	완도군		
2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4	_	0	답	1,531	1,531	추승룡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20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4	_	0	답	1,531	1,531	완도군		
2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5	-	0	답	1,600	1,600	이정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47-13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815	_	0	답	1,600	1,600	완도군		

ΜЫ	7.8	k 케 키		,	지번		-) II	면	턱(m²)		소유자	ען די
연면	구분	- 소재지		본번	-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비고
2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5	-	1	답	1,213	1,213	최철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290-46 소촌2차모아드림 타운 204-705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5	-	1	답	1,213	1,213	완도군		
2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6	_	0	답	489	489	문승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263-20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6	-	0	답	489	489	완도군		
2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7	-	0	잡	1,888	1,888	이미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27-11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7	-	0	잡	1,583	1,583	이미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37-20 101동 303호(한아름골든빌)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7	-	1	잡	250	250	이미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37-20 101동 303호(한아름골든빌)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7	_	3	잡	54	54	이미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로 137-20 101동 303호(한아름골든빌)	
2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8	-	0	답	724	724	박수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1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8	_	0	답	724	724	완도군		
3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9	_	0	답	1,494	1,494	박수남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1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19	_	0	답	1,494	1,494	완도군		
3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4	_	0	답	397	397	최철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85 삼성그린빌라 301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4	-	0	답	397	397	완도군		
32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5	_	1	답	1,041	1,041	임정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11-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5	_	1	답	1,041	1,041	완도군		
3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5	_	2	답	1,121	1,121	임정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49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5	-	2	답	1,121	1,121	완도군		
3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6	_	0	답	1,269	1,269	유만성외 2인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46-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6	_	0	답	1,269	1,269	완도군		
3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7	_	1	답	316	316	이용욱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29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7	-	1	답	316	316	완도군		
3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7	-	2	수	11	11	국(국토해양부)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용리	827	-	2	수	11	11	완도군		

чя	7.11	소재지		지번		7) 🗆	면진	택(m²)		소유자	비고
선턴	구분	소새시	본번	-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미끄
3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829	-	1	답	165	165	추현화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3-67 은혜비치 2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하	829	_	1	답	165	165	완도군		
3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하	830	-	1	답	676	676	유종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668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830	-	1	답	676	676	완도군		
3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831	-	0	답	2,655	2,655	강광춘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26-10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831	-	0	답	2,655	2,655	완도군		
4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832	-	0	답	1,521	1,521	이지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506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832	-	0	답	1,521	1,521	완도군		
4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833	-	0	답	820	820	김승용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822-12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833	-	0	답	820	820	완도군		
42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843	-	3	답	791.0	791.0	이영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702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843	-	3	답	791.0	791.0	완도군		
4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1003	-	3	도	289.0	289.0	국(국토해양부)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1003	-	3	토	289.0	289.0	완도군		
4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1004	-	1	도	802.0	802.0	국(국토해양부)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1004	-	1	도	802.0	802.0	완도군		
4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다	1093	-	8	장	3.0	3.0	주식회사 문영공업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93-5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1093	-	8	장	3.0	3.0	완도군		
4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1097	-	1	도	13.8	13.8	완도군		
4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	1098	-	1	구	1,751.6	1,751.6	완도군		
4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하	1 산17	-	1	임	857	857	이창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삼계리 562-6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1 산17	-	1	임	857	857	완도군		
4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1 산20	-	1	임	832	832	이창묵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삼계리 562-6	
•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히	1 산20	_	1	임	832	832	완도군		

બ મો	7.19	ઢ નો! નો		지번		지목	면?	덕(m²)		소유자	비고
컨텐	구분	소재지	본번	-	부번	시박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미꼬
5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963	1	7	도	504.0	504.0	국(국토해양부)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963	_	7	도	504.0	504.0	완도군		
5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3	_	1	답	302.0	302.0	김등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730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3	_	1	답	302.0	302.0	완도군		
52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4	-	1	답	15.0	15.0	김등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730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4	-	1	답	15.0	15.0	완도군		
5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5	_	1	창	1,351.0	1,351.0	정민혁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6-7 상무지구호반아파트 102동 1302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5	_	1	창	1,351.0	1,351.0	완도군		
5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6	-	0	전	668	668	정민석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062-8 금호빌라 1동 202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6	_	0	전	668	668	완도군		
5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7	-	3	답	485.0	485.0	정현희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6-32 학림아파트 102동 7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67	-	3	답	485.0	485.0	완도군		
5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71	-	2	답	509	509	박기만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897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71	-	2	답	509	509	완도군		
5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79	-	0	전	540	540	김연동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799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79	-	0	전	540	540	완도군		
5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0	-	0	전	1,512	1,512	박동명외 1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845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0	-	0	전	1,512	1,512	완도군		
5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1	-	2	전	73	73	국(기획재정부)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1	-	2	전	73	73	완도군		
6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	전	1,565	1,565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	전	1,565	1,565	완도군		
6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_	4	임	15,319	15,319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4	임	15,319	15,319	완도군		

어비	구분	소재지	,	지번		지목	면	턱(m²)		소유자	비고
컨텐	十七	· 조세시	본번	-	부번	시속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미끄
6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0	전	1,134	1,134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0	전	1,134	1,134	완도군		
6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2	임	694	694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2	임	694	694	완도군		
6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3	전	1,577	1,577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3	전	1,577	1,577	완도군		
6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4	전	1,400	1,400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_	14	전	1,400	1,400	완도군		
6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9	임	4,574	4,574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19	임	4,574	4,574	완도군		
6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0	임	6,593	6,593	강종수외 2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6-16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_	20	임	6,593	6,593	완도군		
6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1	임	9,078	9,078	이형옥외 1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3 경희궁의아침4단지 아파트 -1404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_	21	임	9,078	9,078	완도군		
7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2	임	2,538	2,538	조광용외 1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54 현대아파트 102동 405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_	22	임	2,538	2,538	완도군		
7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3	임	1,088	1,088	조광용외 1인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154 현대아파트 102동 405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3	임	1,088	1,088	완도군		
72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5	임	2,641	2,641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5	임	2,641	2,641	완도군		
73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6	임	2,309	2,309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3	-	26	임	2,309	2,309	완도군		

બ મો	구분	소재지		,	지번		기 다	면?	적(m²)		소유자	비고
21	丁世	소 생 시		본번	-	부번	지목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비꼬
74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3	-	33	전	1,490	1,490	윤영기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 4길 29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3	_	33	전	1,490	1,490	완도군		
75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3	-	47	전	399	399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3	_	47	전	399	399	완도군		
76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3	-	75	임	2,053	2,053	정민남외 3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4가 656-1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3	_	75	임	2,053	2,053	완도군		
77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4	-	1	전	33	33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4	_	1	전	33	33	완도군		
78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5	-	0	임	64	64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5	_	0	임	64	64	완도군		
79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5	-	1	임	20	20	고경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81-4 현대아파트 309동 303호	
	변경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485	_	1	임	20	20	완도군		
80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940	-	1	도	748.4	748.4	완도군		
81	기정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	읍 죽청리	1001	-	1	도	546.6	546.6	완도군		

고시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5-31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정창조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고시 제2016-4	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등	결정 공시		
내용	201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등	결정 공시코자 합니(다. 다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6. 5. 31

완 도 군 수

- 1. 결정 · 공시일 : 2016. 5. 31
- 2. 결정 · 공시장소 : 토지소재 읍·면사무소 게시판
- 3. 결정 ·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읍·면사무소 비치)
- 4. 결정 · 공시필지 : 188,004필(읍·면별 내역 별첨)
- 5.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가. 기 간 : 2016. 5. 31 ~ 6. 30(30일간)
 - 나. 장 소 : 군 및 토지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 민원실
 - 다.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라. 이의신청 제출방법 : 군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서 제출
- 6. 이의신청 처리 : 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 부동산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군청 민원봉사과(☎550-5372) 또는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역 □

(단위 : 필지)

1. 조사필지 명세

구 분	전	체 (A	.)	조	사 대 상 ((B)	비율	ロスカ
읍·면	계	사 유	국·공유	소 계	사 유	국·공유	(B/A)	표준지
계	219,570	165,547	54,023	188,004	156,393	31,611	85	2,729
완도읍	30,484	21,505	8,979	29,631	20,960	8,671	97	482
금일읍	18,868	15,431	3,437	17,788	14,843	2,945	94	243
노화읍	23,530	18,206	5,324	23,152	17,939	5,213	98	285
군외면	19,904	13,602	6,302	18,115	12,927	5,188	91	256
신지면	19,190	14,182	5,008	14,460	13,409	1,051	75	246
고금면	27,685	20,689	6,996	20,376	18,972	1,404	73	331
약산면	16,097	11,264	4,833	11,370	10,186	1,184	70	184
청산면	24,173	20,263	3,910	18,952	18,400	552	78	243
소 안 면	16,301	12,865	3,436	12,563	11,838	725	77	170
금당면	7,550	5,580	1,970	6,886	5,383	1,503	91	97
보길면	9,327	6,866	2,461	8,763	6,692	2,071	93	108
생일면	6,461	5,094	1,367	5,948	4,844	1,104	92	84

※ 2016 지가 결정 자료 별첨(전산 파일)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5-04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216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및 어업면허 처분 공고								
	수산업법 제30조 제5항 및 어	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35조의 규정	에 의하여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하고 수	산업법 제8조 제2형	y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내용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급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고시 공고를(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업권포기 신고 수리 당	및 어업면허 처분 공	고(안)1부. 끝.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공 고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권 포기 신고 수리하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사항을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5월 4일

완 도 군 수

어업권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권 포기신고내역

면 허	어업의	품 종	포기 면적	어장	어 업	권 자	포기	포기일자
번 호	종 류	0	(ha)	위치	주 소	성 명	사유	177EA
계	1건		10.0					
13173	패류	전복 등	10.0	소안 가학	소안 가학	가 학 어촌계	대체개발	2016. 5. 4. 추가 승인 11번(전복 등10ha)포기 패류(전복 등) 10ha대체개발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면적	О	업권자	머ᅱ기기	수면		
번호	종 류	방 법	6	위치	(ha)	주 소	성 명	면허기간	번호
Я	2건				20.0				
13865	패류	가두리식	전복 등	소안 가학	10.0	소안 가학	가 학 어촌계	2016. 5. 4. 2026. 5. 3.	추가 11
13866	복합	연승수하식, 가두리식	미역, 전복 등	소안 가학	10.0	소안 가학	가 학 어촌계	2016. 5. 4. 2026. 5. 3.	추가 13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5-04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호 완도군 공고 제2016-217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면허 처분 공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l등에관한 규칙 제6조 저	2항의			
1110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	였기 고시 공고를(시	군구보)(홈페이지)(게시된	<u>파</u>)에			
내용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업면허 처분 공고(안)	1부. 끝.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공 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년 5월 4일

완 도 군 수

어업면허 처분내역

□ 어업면허 처분내역

면허	어업의	어업의	<u></u>	어장	면적	О	업권자	머튀기기	수면
번호	종 류	방 법	품 종	위치	(ha)	주 소	성 명	면허기간	번호
계	4건				81.0				
13864	패류	투석식	전복 등	소 알 항	4.0	소안 월항	월 항 어촌계	2016. 5. 4. 2026. 5. 3.	본 33
2488	마을	규칙제11조에 의함	해조류,패류,해삼 정착성수산동물	소안 이목	10.0	소안 이목	이 목 어촌계	2016. 5. 4. 2026. 5. 3.	본 74
2489	마을	규칙제11조에 의함	해조류,패류,해삼 정착성수산동물	소안 비자	49.0	소안 비자	비 자 어촌계	2016. 5. 4. 2026. 5. 3.	본 75
2490	마을	규칙제11조에 의함	해조류,패류,해삼 정착성수산동물	소안 북암	18.0	소안 북암	북암 어촌계	2016. 5. 4. 2026. 5. 3	본 76

공고내용

페이지: 1/1

게재(요청)일자	2016-05-10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이수진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239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201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2016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역 공고						
	2016년 완도군 어장이용개발계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획을 다음과 같이 수	립하였기 수산업법 시행량	경 제2조제7항의				
내용	단, 개발계획 수면의 위치도는 지면관계상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및 각 읍면에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안) 1부. 끝.							

완도군 공고 제 2016 - 239호

공 고

2016년 완도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단, 개발계획 수면의 위치도는 지면관계상 완도군청 수산양식과 및 각 읍· 면에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 년 05 월 10일

완 도 군 수

【2016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단위 : 건, ha)

어입	널의	W 7		계	신 ⁻	규개발	대치	체개발	재	개발	불	·숭인
종	류	품 종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158	4,886.20	20	1,161.50	92	2,610.20	46	1,114.50	43	1,286.7
		소 계	82	3,847.7	20	1,159.5	42	2,131.2	21	556.0	15	983.7
		김 등	24	2,616.7	6	1,006.5	11	1,230.2	7	380.0	-	-
-33		매생이 등	5	18.8	1	1.30	4	17.5	-	-	1	152.0
해 <i>፭</i> 양	스뉴 식	미 역 등	41	1,028.2	9	103.7	25	845.5	7	79.0	12	792.0
	'	파래	1	18.0	-	-	1	18.0		-	1	29.0
		다시마 등	10	156.0	3	48.0	1	21.0	9	87.0	1	10.0-
		참모자반 등	1	10.0	-	-			1	10.0	-	-
		소 계	52	441.5	1	2.0	35	321.0	16	118	24	264.0
		가리비	1	2.0	1	2.0	-	-	-	-	2	26.0
		굴 등	13	114.0	-	-	2	26.0	11	88.0	4	61.0
패 양	류 식	바지락	1	12.0	-	-	1	12.0	-	-	-	-
0	٦	피조개 등	1	5.0	-	-	1	5.0	-	-	-	-
		고막	1	1.50	-	-	-	-	1	1.50	-	-
		전복 등	35	307.0	-	1	31	278.0	4	29.0	18	177.0
		소 계	16	177.0	-	-	15	157.0	1	20	4	39.0
н	줐).	미역, 우렁쉥이	2	15.0	-	-	2	15.0	-	-	-	-
복 양	합 식	전복(미역,다시마)	13	144.0	-	-	12	124.0	1	20	2	20.0
	,	김, 바지락 등	1	18.0	-	-	1	18.0	-	-	1	16.0
		어류, 전복	-	-	-	-	-	-	-	-	1	3.0
마	9일	소 계	8	420.0	-	1			8	420.0	1	-
어		해조류,패류,해삼, 유용성수산동식물	8	420.0	-	-	-	-	8	420.0	-	-

공고내용

페이지: 1/1

게재(요청)일자	2016-05-17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주정화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24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민간자본유치 투자희망자 공모	민간자본유치 투자희망자 공모 공고						
내용		2016년도 완도군 군외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군외면 원동리 일원에 대형해수사우나 및 수산물 물류센터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희망자를 공모합니다.						

완도군 공고 제 2016 - 243호

민간자본유치 투자희망자 공모 공고

2016년도 완도군 군외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군외면 원동리일원에 대형해수사우나 및 수산물 물류센터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희망자를 공모합니다.

다 음

- 1. 사 업 명 : 대형해수사우나 및 수산물 물류센터
- 2. 사업기간 : 2016 ~ 2019(4년)
- 3. 공모기간 : 2016. 05. 17 ~ 2016. 06. 06 (20일간)
- 4. 사업규모 : 11,776백만원(공공 6,000, 민간 5,776)
 - 가. 해수목욕탕(규모: 660m², 추정공사비 3,143백만원)
 - 나. 회센터(규모 : 515m², 추정공사비 2,633백만원)
- 5. 사업부지 현황 :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일원
- 6. 투자 혜택 : 필요 사업부지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
- 7. 접수 및 연락처 : 완도군 지역개발과
 - 가.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 나. 전화 : 061) 550-5602, 팩스 : 061) 550-5599

사업 현황

- □ 군외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O 위 치 : 군외면 원동리 일원
 - **○** 기 간 : 2016 ~ 2019(4개년)
 - O 사 업 비 : 6,000백만원(국비4,200 군비1,800)
 - 사 업 량 : 커뮤니티센터, 카쉼터, 해상공원, 먹거리해변길 등

2016. 05. 17

완 도 군 수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5-25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김후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	-25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길도예송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공고								
	1. 선발인원	선발인원								
	○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1110	○ 2016. 6. 13. ~ 12. 31.									
내용	3. 근무처 및 근무시간									
	○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정	보센터(보길도 예송	리)							
	○ 매주 월 [~] 금, 09시부터 1	○ 매주 월 [~] 금, 09시부터 18시까지(8시간)								
	※ 근로조건 : 정보화마	을 프로그램관리자	근무규정 참고							

완도군 공고 제2016-255호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공고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완 도 군 수

1. 선발인원

○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16. 6. 13.~12. 31.

3. 근무처 및 근무시간

-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정보센터(보길도 예송리)
- 매주 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8시간) ※ 근로조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근무규정 참고

4. 응시자격

- 채용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주요 담당업무 및 채용 희망 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해야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 대상마을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은 겸직 가능
- 지원 대상마을 대표(이장, 운영위원장)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마을 대표와 운영위원은 프로그램관리자 겸임 불가

5. **선발기준**

-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 주요경력
- 프로그램관리자 임무 수행의 적정성 등

◇ 프로그램관리자의 임무

- ① 마을정보센터의 상시 개방 · 운영 및 물품 · 집기 관리
- ② 마을 홈페이지 게시판, 마을관리시스템, 커뮤니티 등 전담관리, 마을홍보・마케팅
- ③ 특산물 전자상거래 주문 · 배송 지원, 회계 · 고객관리
- ④ 마을단위 체험콘텐츠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예약관리 지원
- ⑤ 혼글, 파워포인트, 엑셀, 인터넷 활용 등 지역 주민의 정보화교육 실시
- ⑥ 마을주민 중 전자상거래, 체험콘텐츠 관리자 교육 실시 등
- 프로그램관리자로서의 자질
- 우대요건(가점 최대5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 관련서류 제출자(최대3점)
 - ※ 취업취약계층: ①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②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계층) ③고령자 ④장애인 ⑤여성가장 ⑥결혼이민자 ⑦북한이탈주민
 - 유사형태 마을 사무장 경력 유무,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자격증 보유 여부(최대2점)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처 :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보길면사무소 총무담당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 완도군대표홈페이지(www.wando.go.kr)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기간 : 2016. 6. 7.~6. 9.(3일간)

- 제출서류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지원 신청서 1부 (필수)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1통 (필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 보유자)
 -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 보유자, 경력별 각 1부)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합격자 발표 : 2016. 6. 10.(별도 개별통보) ※ 접수자가 많을시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결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담당(061-550-5202)이나 보길면사무소 총무담당(061-550-6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근무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이하 '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관리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 타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총칙

제3조(준수의무)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법령, 제 규정과 직무명령을 준수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2. 신의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마을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과 사를 분별하여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4.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보안서약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해당마을 위원회에 제출
- 5.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6. 관리자는 협약 당사자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거나 마을관리자 이외의 타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 7. 관리자는 재해 기타 비상시에는 마을정보센터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8. 관리자는 해당마을 주민의 채무자가 되거나 그 채무자의 보증인이 될 수 없다.

제2절 근무 및 휴게시간

제4조(근무시간) ①1주 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 ②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일 4시간, 주 12시간을 한도로 제4조제1항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③마을 운영위원장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관리자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무 시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한다. 단, 마을위원장의 지시가 없는 자의 적 근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57조(보상 휴가제)

제5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매일 오전12시부터 오후1시까지 1시간을 부여 한다.

제6조(출퇴근) 관리자는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시간 종료 후퇴근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자 근무 상황부를 작성·비치하며, 매월 직무수행보고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근 등의 신고) 질병 기타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개시 후 1시간이내에 마을 운영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지) 관리자는 마을정보센터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다만 마을내행사,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마을 운영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마을정보센터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제9조(근태상황 확인) 마을위원장은 소속 마을관리자의 근태상황을 확인 하고 시·군·구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시·군·구 담당자는 관리자의 근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급여) 관리자의 급여 지급은 근무협약서에 명시한 기간내에 정기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휴일 및 휴가

제11조(공휴일) 프로그램관리자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1. 주휴일
-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휴일)
- 3.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제12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정기휴가, 특별휴가, 병가 및 공가로 구분한다.

제13조(정기휴가) ①정기휴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근속연수 1년 미만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가.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3일
- 나. 6개월 이상 ~ 1년 이하 : 6일
- 2. 재계약으로 인해 1년 초과될 때 마다 정기휴가에 1일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휴가는 계약기간 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 휴가는 규정에 맞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특별휴가) ①관리자는 각호의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양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 1. 본인결혼 : 5일
 - 2. 배우자 출산 : 5일
 - 3.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4.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6. 본인 입양 : 20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입양에 한함)

- ②임신 중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 ③여성관리자는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회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15조(병가) ①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마을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 후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능일 때
-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마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의 업무수행이 불능일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를 실시한 관리자는 의사의 진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사실증명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한다.
- ③60일을 초과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관리자로서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마을 운영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여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공가)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2. 병역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4.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7조(정기휴가와의 관계) 특별휴가, 병가, 공가기간은 정기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장 업무 및 보고

제1절 업무

제18조(업무범위) 관리자는 정보화마을사업에 국한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마을정보센터 운영 · 관리
 - 가. 마을정보센터 운영 및 사무관리
 - 나. 마을내 문서관리 및 홍보물, 자료관리
 - 다. 마을정보센터 비품 및 기자재 관리
- 2. 마을홈페이지 운영 · 관리
 - 가. 마을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통한 에러체크
 - 나.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항 파악 및 조치
 - 다. 마을 홈페이지 내 각종 게시판 운영 · 관리
- 3. 지역주민 교육 및 교육실적 관리
 - 가. 지역주민대상 정보화 교육 실시
 - 나. 중앙ㆍ지방 집합교육 참석 및 마을 내 전파교육 실시
- 4. 마을 내 수익모델(특산물, 체험관광 등) 개발 및 관리
 - 가. 마을 내 특산물 상품 개발 및 상품등록
 - 나. 전자상거래 주문확인 및 배송관리(배송확인, 배송지시)
 - 다. 마을 내 체험관광 상품 콘텐츠 등록 및 관리
 - 라. 마을 정산관리(특산물, 체험관광)
- 5. 마을 고객관리
 - 가. 마을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고객응대
 - 나. 마을정보센터 대표전화를 통한 전화 고객응대
 - 다. 마을방문 고객들에 대한 방명록 관리 및 고객문의사항 응대
 - 라. 특산물 및 체험관광 관련 문의고객 응대

- 6. 해당 마을과 관계된 각종 보고서 제출
 - 가. 운영평가시스템 입력
 - 나. 안행부, 시도, 시군구, 중앙사업단 요구자료 제출
 - 다. 정기보고자료 제출
 - 라. 마을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 7.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한 마을 내 기타 공적인 업무

제19조(지휘감독) ①관리자는 계약기간 중 제18조의 업무를 수행하며, 마을 운영위원장, 해당 시도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 근무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② 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마을 운영위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본 근무규정에서 명시한 업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 등 정보화마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제2절 보고

제20조(보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를 양식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 1. 마을현황보고 : 근무지 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별지 제9호>
- 2. 추진현황(결과)보고 : 월 1회(익월 5일, 시・군・구)<별지 제10호>
- 3. 직무수행보고 : 월 1회(익월 5일, 시·군·구)<별지 제11호> ※ 마을 월, 분기, 연간 보고를 직무수행보고로 통합·운영
- 4. 안행부, 시도, 시군구, 중앙협회, 중앙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수시)

제4장 계약해지

제21조(계약해지) ①마을 운영위원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린 후 계약해지를 행한다.

- 1. 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관리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 4. 근로협약서에 명시한 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5. 직무의 내용을 불문하고 해당마을 및 정보화마을사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 6.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마을 및 마을정보센터에 재산적인 손실을 끼친 경우

제22조(보고 및 집행) ①관리자의 계약해지가 결정된 때에는 계약해지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한 계약해지 내용을 해당 시도의 시장·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계약해지가 결정되면 대체인력을 선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지원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	[월일)	년	월	일	(성팀	별)
① 최종학교	학교		과(전공	+)	년	월	(졸업,	졸업예정)
주 소								
연락처			01	메일				
② 보유자격증								
③ 채용희망마을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 주요경력								
	우대사항	관련	변호	빌	급일지	1	발급	급기관
⑥ 우대사항								
⑦ 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월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최종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 및 전문대 졸업 이하의 학력 으로 전공구분이 없을 경우 전공은 기입하지 않아도 됨

(예시1:00고등학교 00년 00월 졸업)

(예시2:00대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00월 졸업)

- ② 보유자격증
- 보유한 자격증에 대한 시행처와 취득연월을 자세하게 기재 (예시 : 대한상공회의소 워드프로세스2급 06년 08월 취득)
-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프로그램관리자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기재 (연, 월 표시 필수)
- ⑥ 우대사항
- 장기실업자(구직등록일 기준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청년은 졸업일 기준),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차차상위계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지원서외 첨부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통 (필수)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 3. 자격증 사본 각 1부 (자격증 보유자)
- 4.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 보유자, 경력별 각 1부)
- 5.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 첨부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 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직무수행계획서

① 신청자	(성명)		(생년	1월일)	년	월	일	(성별)
② 채용희망마을								
③ 추진목표								
④ 직무수행 계획개요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월	담당업무	-	주요니	귀용 및	계획		비고
⑥ 직무수행계획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 지원사업의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월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7호 서식] <마을용 : 앞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계획서

① 신	l청마을				
② 추	티목표				
차	로그램관리자 용 지원사업에 I한 관심도				
④ 운	연계획 개요				
)당업무(분야) ! 주요내용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⑥ 운	2영계획				
⑦ フ	l대효과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지원사업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일: 년 월

신청마을대표 : (인)

[별지 제8호 서식]

보안 서약서

성 명:

주민번호:

주소:

상기인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취득 또는 관리한 사항 일체(고객정보, 운영사항 등)에 대해 근무 기간 및 퇴직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일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 배상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상기인: (인)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귀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채용희망자용>

본인은 2016년도 보길도예송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자로서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

구분	항 목	목 적
1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
2	전화번호(핸드폰 번호 포함)	.공지사항, 업무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등
3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사항 (전공학과, 졸업 유무 등)	.응시자격 확인
4	본인의 우대사항 ※ 경력, 자격증, 기타 사항 등	.우대사항에 대한 확인
5	본인의 자기소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참고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2.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의	예비합격자는 직원 계약 전 까지, 최종합격자는 계약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종료시 까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불합격 처리)이 발생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6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성 명: (서명)

완도군수 귀하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16-05-30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조대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26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완도군 도로명변경 공고					
	『도로명주소법』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완도군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5. 30 ~6.13 (15일간)					
내용	○ 도로명 변경사유 : 주민신청(마을명 사용)					
ਪਾ ਠ 	○ 의견 제출자의 범위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 의견 제출기간 : 2016. 6. 13까지 (우편제출시 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완도군 공고 제2016-263호

공 고 문

『도로명주소법』제7조의3 규정에 따라 완도군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30

완 도 군 수

- 공고기간 : 2016. 5. 30 ~6. 13 (15일간)
- 도로명 변경사유 : 주민신청(마을명 사용)
- 의견 제출자의 범위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 의견 제출기간 : 2016. 6. 13까지 (우편제출시 공고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 붙 임:1. 도로명 변경(안) 1부.
 - 2. 주민 의견제출서 1부.

■ 도로명 변경(안) - 완도읍

연	버거리	도로명		도로구간		주소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1	-) () -)	청해진동로97번길	소가용길	가용 163-5	가용 122-3	53
1	가용리	장보고대로41번길	신기길	가용 592-1	가용 746-1	79
		죽청82번길	죽청1길	죽청 384-3	죽청 864	35
2	죽청리	청해진로1550번길	죽청2길	죽청 388-3	죽청 622-1	31
		청해진로1568번길	죽청3길	죽청 396-4	죽청 산1-1	20
		청해진로1303번길	대야일구길	대야 726-6	대야 640-25	53
	حاا ما-عا	청해진로1304번길	대야일구1길	대야 726-6	산132-50	54
3	대야리	청해진로1323번길	대야일구2길	대야 762-2	대야 574	23
		청해진로1251번길	대야이구길	대야 335-4	대야 산9	89
4	망석리	청해진서로163번길	망석길	망석 806-3	망석 133	126
4	정식다	청해진서로236번길	석장길	망석 1039-5	망석 1028	39
	중도리	청해진서로292번길	도암길	중도 110-11	중도 344-2	56
5		청해진서로398번길	중도길	중도 522-6	중도 574-3	68
		청해진서로468번길	사정길	중도 1039-2	중도 701-1	43
6	정도리	청해진서로549번길	정도길	정도 354-27	정도 493	90
	7814	청해진서로537번길	정도1길	정도 315-3	정도 591	60
		청해진서로698번길	화개길	화흥 271-2	화흥 113	47
7	화흥리	청해진서로796번길	부흥길	화흥 591-2	화흥 9	53
,	अ रुप	청해진서로814번길	부흥1길	화흥 627-3	산1-175	21
		청해진서로822번길	부흥2길	화흥 882-3	화흥 89-79	35
		청해진서로849번길	대구길	대신 83-1	대신 1258	77
		청해진서로975번길	대신길	대신 596-3	대신 463-4	16
8	대신리	청해진서로993번길	대신1길	대신 646-3	대신 529-1	47
	11건년	청해진서로994번길	대신2길	대신 743-3	대신 463-4	33
		청해진서로1013번길	대신3길	대신 660-2	대신 465-9	37
		청해진서로1155번길	대신4길	대신 109-5	대신 1018	14

■ 도로명 변경(안) - 금일읍

of all	법정리 -	도로명		도로구간		주소
연번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금일로389번길	감목길	화목 961-5	화목 611-2	75
1	화목리	금일로390번길	감목1길	화목 961-5	화목 990-6	28
1	(감목리)	금일로400번길	감목2길	화목 160-8	화목 168-3	25
		금일로407번길	감목3길	화목 163-6	화목 958-1	29
2	화목리	화목장정42번길	상화전길	화목 838-1	화목 545-2	24
3	화목리 (하화전	금일로274번길	하화전길	화목 1033-6	화목 871-11	13
J	리)	금일로277번길	하화전1길	화목 739-30	화목 745-11	40
	신구리 (신평리)	신구길	신평길	신구 977-3	신구 1023-6	22
4		신구11번길	신평1길	신구 982	신구 910-1	31
		금일로457번길	신평2길	신구 850-2	신구 680-6	49
5	신구리 (구동리)	신평후포길	구동길	신구 1336-2	척치 산256-5	85
5		신평후포34번길	구동1길	신구 566-1	신구 153	28
		화목장정길	도장길	화목 739-6	장정 444-8	70
6	장정리 (도장리)	화목장정148번길	도장1길	장정 236-3	장정 406	124
		금일로151번길	도장2길	장정 545-1	장정 509	19
7	장정리	금일로8번길	일정길	장정 691-4	장정 705	26
,	(일정리)	금일로42번길	일정1길	장정 598-1	장정 740-2	33
8	충동리 (용항리)	동송용항100번길	용항길	월송 34-1	충동 산254-1	42
0	충동리	동송용항161번길	동송길	충동 812-1	충동 547	31
9	(동송리)	동송용항185번길	동송1길	충동 825-1	충동 547	21

■ 도로명 변경(안) - 금일읍

તે મો	법정리	도로명		도로구간		주소
연번		현 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10	월송리	금일로707번길	월송길	월송 720-2	월송 67-1	79
10	(월송리)	금일로725번길	월송1길	월송 570-2	월송 623-6	33
		동백39번길	동백1길	동백 459-4	동백 130	16
11	동백리 (동백리)	동백41번길	동백2길	동백 510-2	동백 569-2	42
		동백73번길	동백3길	동백 640-4	동백 245-3	70
		금일로1001번길	죽동길	사동 251-3	사동 140-1	42
12	사동리 (죽동리)	사동길	죽동1길	사동 225-2	사동 6-2	49
		사동49번길	죽동2길	사동 40-20	사동 86-2	29
13	사동리 (소랑리)	금일로1200번길	소랑길	사동 561-3	사동 742-1	40

■ 도로명 변경(안) - 노화읍

연	비기기기	도로명		도로	도로구간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1	드시크	노화서로162번길	대당길	등산 152-2	등산 125-2	29
1	등산리	노화서로178번길	대당1길	등산 282-5	등산 248-2	13
		고막길	북고길	산 113-2	산 52-5	47
2	고막리	노화서로507번길	북고1길	고막 627-2	고막 647-3	21
		고막55번길	북고2길	산 76-6	산36	38
		이포등산311번길	당산길	등산 933-2	등산 1269-3	40
3	등산리	이포등산345번길	당산1길	등산 1038-2	등산 1129-6	43
		이포등산397번길	당산2길	산92-2	등산 1235-10	33
		노화북로205번길	양하길	신양 1002-2	신양 1178-2	18
4	신양리	노화북로241번길	양하1길	신양 1108-2	신양 1079-5	24
		노화서로614번길	신목길	신양 215-3	신양 447-3	42
5	이포리	노화서로13번길	포전길	이포 375-7	이포 540-4	69
6	등산리	노화서로243번길	염등길	등산 612-4	등산 777-2	27
7	방서리	넙도298번길	방축길	방서 2-1	방서 291-3	42
(3/14	넙도388번길	방축1길	방서 88	방서 162-5	45
8	구석리	노화로304번길	송원길	구석 935-32	구석 1785-1	8
0	千省日	노화로395번길	활목길	구석 1737-1	구석 1063-4	7
		노화서로114번길	도청길	도청 530-2	도청 633-3	22
		노화서로126번길	도청1길	도청 403-2	도청 669	13
9	도청리	노화서로144번길	도청2길	도청 355-3	도청 1544-15	26
		노화서로99번길	소당길	도청 976-4	도청 1042	16
		노화서로113번길	소당1길	도청 591-2	도청 547	9

■ 도로명 변경(안) - 노화읍

연	버거기	도로명		도로구간		주소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노화북로433번길	구목길	구석 486-4	구석 467-1	17
10	구석리	노화북로425번길	구목1길	구석 336-3	구석 433	13
		노화북로427번길	구목2길	구석 337-2	구석 457-1	12
		노화로94번길	천구1길	동천 1026-5	동천 1005-1	14
11	동천리	노화로78번길	천구길	동천 1034-10	동천 1095	17
		노화로206번길	천구2길	동천 539-88	동천 810	13
12	고막리	노화서로399번길	삼마길	고막 474-2	고막 442-2	27

■ 도로명 변경(안) - 군외면

연	111 =1 =1	도로명		도로	구간	주소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청해진로240번길	원동길	원동 1064	원동 176-1	46
		청해진서로2100번길	원동1길	원동 238	원동 1065-3	105
1	원동리	청해진로111번길	달도길	원동 1041	원동 615-1	36
		청해진로115번길	달도1길	원동 1059	원동 288	30
		청해진로62번길	염수길	원동 753-1	원동 969-5	31
		청해진로308번길	중리길	황진 산2-4	황진 836-1	21
2	황진리	청해진로364번길	중리1길	황진 728-3	황진 824-3	15
		청해진로376번길	중리2길	황진 688-1	황진 671	26
3	불목리	청해진로738번길	영흥길	불목 546	불목 산117	81
3	출 등 다	청해진북로627번길	불목길	불목 305-2	불목 28	29
		청해진로875번길	영풍길	영풍 462-5	영풍 441-3	42
1	영풍리	청해진로876번길	영풍1길	영풍 462-5	영풍 산182	43
4	। उड़प	청해진로997번길	대창일구길	영풍 산85-3	영풍 181-57	43
		청해진로1063번길	대창이구길	영풍 84-7	영풍 7-3	49
		청해진서로2036번길	망축길	신학 675-2	신학 701	43
		청해진서로2098번길	망축1길	원동 237-8	신학 산3-1	15
5	신학리	청해진북로88번길	초평1길	신학 1089	대문 산109-105	14
		청해진북로110번길	초평길	신학 328-1	신학 1060-9	31
		청해진서로2005번길	신흥길	신학 758-2	신학 876-4	60
6	대문리	청해진서로1963번길	대문길	대문 409-4	대문 344-5	40
	네보니	청해진서로1981번길	대문1길	대문 501-6	대문 874-1	23
7	삼두리	청해진서로1598번길	삼두1길	삼두 489-5	삼두 102	34
	<u>в</u> ГЧ	청해진서로1606번길	삼두길	삼두 501-2	삼두 338-2	100
		청해진서로1391번길	당인길	당인 212-4	당인 250-8	20
8	당인리	청해진서로1403번길	당인1길	당인 385-3	당인 249-1	57
	0 년년	청해진서로1311번길	당인2길	당인 70-7	당인 182-121	32
		청해진서로1312번길	당인3길	당인 70-7	당인 산14-1	36

■ 도로명 변경(안) - 고금면

연	법정리	도로명		도로	구간	주소
번	법생덕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고금로570번길	농상길	농상 600-1	농상 252	8
1	농상리	고금로591번길	농상1길	농상384-8	농상 1072	58
		고금서로76번길	백운길	농상 1097-2	농상 1325	11
		농상도남79번길	영부길	농상 141-2	농상 120-9	11
		농상도남111번길	장풍길	도남 897-2	도남 673	16
2	도남리	농상도남60번길	연동길	농상 187-4	도남 1018-2	23
	<u> </u>	고금남로266번길	척찬길	도남 1291	도남 1546-4	29
		고금남로132번길	부곡길	도남 260-3	도남 414-1	27
		고금서로303번길	봉암길	회룡 1450-5	회룡 1274	10
3	회룡리	고금서로268번길	봉암1길	회룡 1163-5	회룡 1440-1	46
		고금서로174번길	장중길	회룡 1550-36	회룡 1105	27
		고금로234번길	상정길	상정 176	상정 212-1	31
4	상정리	고금로239번길	상정1길	상정 180-1	상정 93	50
4	0.04	고금로251번길	상정2길	상정 250-1	상정 376	34
		고금로253번길	상정3길	상정 249-4	상정 산36-2	16
5	청용리	고금로755번길	청용길	청용 258-3	청용 340-1	34
	70 रूप	고금로793번길	청용1길	청용 86-2	청용 340-1	37

■ 도로명 변경(안) - 고금면

연	비기기기	도로	ਰੋ	도로	구간	주소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세동서길	내동길	세동 산282-2	세동 2-3	32	
6	세동리	세동서93번길	내동1길	세동 916-2	세동 1022	33	
		고금동로245번길	신장길	세동 산300-2	세동 산97	29	
		고금동로678번길	덕동길	덕동 산40	덕동 307	10	
7	덕동리	세동84번길	충무사길	세동 산206	세동 697	52	
		고금동로576번길	화성길	덕동 344-2	덕동 533	9	

■ 도로명 변경(안) - 약산면

연	H] 7] 7]	도로명	3	도로	주소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약산로374번길	장용길	장용 897-2	산 190-1	51
		약산로383번길	장용1길	장용 891-1	장용 478-7	19
		약산로407번길	구성길	장용 822-2	장용 산249	64
		약산로444번길	죽선길	장용 719-2	장용 981-5	17
1	장용리	약산로450번길	죽선1길	장용 715-2	장용 1025	11
	7874	약산로607번길	가래길	장용 52-1	장용 347-4	9
		약산로637번길	가래1길	장용 55-4	장용 64-2	15
		약산로656번길	가래2길	장용 73-2	장용 227-6	14
		약산로659번길	가래3길	장용 131-9	장용 194-3	21
		약산로673번길	가래4길	장용 226-6	장용 3-3	14
		약산일주로8번길	여동길	우두 399	우두 1277	28
2	우두리	약산로253번길	화가길	우두 산84-8	우두 447-27	58
		약산로143번길	천동넙고길	우두668-179	산313-1	89
		약산일주로144번길	관산1길	관산 593-3	관산 산71-2	32
		관산162번길	관서길	관산 453-2	관산 403-1	37
		관산196번길	관서1길	관산 959	관산 412-1	10
3	관산리	관산153번길	관중길	관산 763	관산 761	4
		관산171번길	관중1길	관산 452-1	관산 760-1	16
		관산123번길	신기길	관산 1017-1	관산 668-2	22
		약산일주로250번길	구암길	관산 산123-1	관산 203-13	37
4	득암리	약산일주로435번길	상득길	득안 181	득안 205-1	14
4	7 6 4	약산일주로298번길	사동길	득암 712	득암 574-9	45
		약산로688번길	해동길	해동 383-4	해동 530	47
		약산로738번길	해동1길	해동 328-2	해동 571-2	25
		약산로746번길	해동2길	해동 327-4	해동 287-21	18
5	해동리	약산로1052번길	어두길	해동 37-33	해동 156	44
		약산로1032번길	어두1길	해동 산25-2	해동 43-12	11
		약산로1048번길	어두2길	해동 37-33	해동 62	26
		약산일주로696번길	가사길	해동 산200-8	해동 913	25

■ 도로명 변경(안) - 청산면

연	버기기기	도로면	5	도로	구간	주소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청산로1589번길	도청1길	도청 1021-3	도청 455	26
1	도청리	청산로1595번길	도청2길	도청 1034-1	도청 1162	27
1	도성덕	청산로3번길	도청3길	도청 930-34	도청 944-2	72
		청산로1613번길	도청4길	도청 944-2	도청 933-2	72
		청산로72번길	도락길	당락 938-1	당락 1066-2	123
2	당락리	청산로153번길	당리길	당락 546-2	당락 778	15
	7944	청산로156번길	당리1길	당락 547-2	당락 606	48
		청산로162번길	당리2길	당락 474-2	당락 444	17
		청산로209번길	읍리길	읍리 1388-2	읍리 855	50
3	읍리	청산로225번길	읍리1길	읍리 929-4	읍리 893	21
3	급덕	청산남로151번길	구장길	읍리 산240-1	읍리 산248	3
		청산남로152번길	구장1길	읍리 산240-1	읍리 1527-1	27
4	부흥리	청산로465번길	신풍길	부흥 427-1	부흥 214-2	27
4	구중되	청산로495번길	부흥길	부흥 326-3	부흥 798	37
5	양중리	청산로525번길	양지길	양중 322-1	양중 504	38
5	उँ हम	청산로597번길	중흥길	양중 204-2	양중 202-2	13
6	동촌리	청산로672번길	동촌길	신흥 507-2	동천 385-2	60
7	신흥리	청산로627번길	신흥길	신흥 162-2	신흥 410-2	12
		청산로1172번길	국화길	국산 773-3	국산 885-2	40
8	국산리	청산로957번길	진산길	국산 273-1	국산 74	23
		청산로972번길	진산1길	국산 262-5	국산 74	34
		청산로1388번길	지리길	지리 544-3	지리 715-2	37
	지리	청산로1401번길	지리1길	지리 649-2	지리 589	14
9	기터	청산로1404번길	지리2길	지리 680	지리 268-3	20
		청산로1405번길	지리3길	지리 673-3	지리 1180	22

■ 도로명 변경(안) - 소안면

연	비기기기	도로만	el S	도로	구간	주소 사용자수 10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1	이월리	소안북로438번길	북암길	이월 127	이월 82	10

■ 도로명 변경(안) - 금당면

연	비기기기	도로면		도로	구간	주소
번	법정리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금당해변로133번길	가학웃산골길	가학 282-2	가학 90	35
1	가학리	금당해변로135번길	가학안골길	가학 279-3	가학 220-2	53
		금당해변로119번길	가학목넘길	가학 282-2	가학 121-1	23
		금당로79번길	차우이촌길	차우 767-3	차우 602-1	12
		금당로102번길	차우길	차우 1007-2	차우 754-3	43
		금당로90번길	차우수리넘길	차우 783-3	차우 602-1	28
2	차우리	금당로113번길	봉동길	차우 965-5	차우 952-2	20
		금당로91번길	세포길	차우 781-10	차우 219	34
		차우길	울포길	차우 44-28	차우 673-9	45
		차우30번길	울포1길	차우 38-6	차우 산182-6	32
		금당해변로771번길	세추목길	육산 산281-1	육산 산253-5	20
		금당해변로673번길	신흥원동길	육산 914-5	육산 885	23
3	육산리	금당해변로845번길	계림길	육산 1186-21	육산 1180-7	15
		금당해변로857번길	셋개길	육산 376	육산 329-1	16
		금당로321번길	삼산길	육산 548-3	육산 1186-21	49

■ 도로명 변경(안) - 생일면

연	법정리	도로면		도로	구간	주소 사용자수 12 31 8 52 37 35 30
번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현행	변경(안)	시작지점	끝지점	사용자수
		생일로752번길	유촌길	유서 1078-2	유서 산185-7	12
1	1 유서리	생일로755번길	유촌1길	유서 841-1	유서 828-1	31
		생일로819번길	유촌2길	유서 888-1	유서 1001-2	8
2	금곡리	생일로1135번길	금곡길	금곡 483-1	금곡 114-1	52
2	ㅁ두덕	생일로1151번길	금곡1길	금곡 400-30	금곡 150	37
		봉선길	용출길	봉선 353-1	봉선 570	35
		봉선18번길	용출1길	봉선 367-1	봉선 528-3	30
3	봉선리	생일로75번길	용출2길	봉선 351-2	봉선 572-4	13
		생일로155번길	굴전길	봉선 67-4	봉선 148-1	26
		생일로171번길	굴전1길	봉선 81-1	봉선 127	25

	주	민의	견 저	게 출 사				
공 고 명			도로	명변경 공고	1_			
이거 레츠리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의견 제출자	주 소				전화번호			
현행도로명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도	로명변경 공고	기와 관련하 ⁶	여 위의	라 같이 의견	견을 제출힙	·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							

공고내용

페이지: 1/1

게재(요청)일자	2016-05-31	담당부서	수산양식과	추영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6-264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수산업법 제14조 제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하 규칙 제22조 제2항의					
내용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내용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공고 1부. 끝	·.			

완도군공고 제 2016 - 호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공고

수산업법 제14조 2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완 도 군 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처분내역(완도,금일,군외,약산)

허 가	면 허	어업의	어업의	품종	면적	면허	면허기간		어입	법권자
번 호	번 호	종 류	방 법	10	(ha)	당초	연장	위 치	주 소	성 명
계	8건				439.0					
2016- 66	12333	패류 양식	가두리식	전복 등	7.5	06.08.17 16.08.16	16.08.17 26.08.16	완도 망남	완도 망 망	망 남 어촌계
2016- 67	12334	패류 양식	가두리식	전복 등	7.5	06.08.17 16.08.16	16.08.17 26.08.16	완도 망남	완도 망남	망 남 어촌계
2016- 68	12265	패류 양식	살포식	바지락	10.0	06.06.16 16.06.15	16.06.16 26.06.15	금일 척치	금일 척치	척 치 어촌계
2016- 69	12323	합 기 과 층	연승수하식	다시마, 전복	20.0	06.06.28 16.06.27	16.06.28 26.06.27	군외 남선	군외 남선	남 선 어촌계
2016- 70	12328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식	김 등	350.0	06.06.30 16.06.29	16.06.30 26.06.29	군외 삼두	군외 삼두	삼 두 어촌계 외 3
2016- 71	12339	패류 양식	살포식	바지락	14.0	06.08.17 16.08.16	16.08.17 26.08.16	군외 고마	군외 고마	고 마 어촌계
2016- 72	12341	패류 양식	살포식	바지락	10.0	06.08.17 16.08.16	16.08.17 26.08.16	군외 삼두	군외 삼두	삼 두 어촌계
2016- 73	12347	복합 양식	연승수하식	미역, 톳, 다시마	20.0	06.08.23 16.08.22	16.08.23 26.08.22	약산 당목	약산 당목	당 목 어촌계